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2)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조항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- 3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금나래아트홀의 운영에 있어 사용료 및 입장권 발행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천구 문화시설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
나)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조항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
다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3) 검토 의견

- 국민권익위원회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제도개선안
 - ◆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 금지
 - 사용료는 국·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책정
 - ▶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 및 역차별 논란 차단
 - ◆ 수익배분 관점에서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 부당수익 및 유착비리 요인 제거
 - 대관 사용료를 관람물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, 대관 기간 별로 사용료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 등 폐지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